

의안번호	2216170
의 퇴 인	정준호의원
회 답 일	2026. 5. 21.
추 계 번호	26B02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5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령¹⁾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전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215개사(인구감소지역 위치 90개사)이며, 번호판 발급 수량은 2,466,752개임

[표 1] 시도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번호판 발급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개사, 개)

지자체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수		번호판 발급 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발급대행자 수	총 발급대행자 수	
서울특별시	—	3	315,418
부산광역시	—	2	129,809
대구광역시	—	2	109,317
인천광역시	—	1	128,718
광주광역시	—	2	81,584
대전광역시	—	3	155,634
울산광역시	—	2	57,981
세종특별자치시	—	2	7,098
제주특별자치도	—	3	35,878
경기도	2	42	711,562
강원도	12	21	58,025
충청북도	8	17	122,775
충청남도	10	18	110,318
전라북도	12	23	130,597
전라남도	17	24	86,413
경상남도	13	26	134,371
경상북도	16	24	91,254
합 계	90	215	2,466,75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내용,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